

# 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## 검 토 보 고

### I. 주요내용

-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“전체 합의”에서 “4분의 3 이상 동의”로 완화함(안 제8조제2항 단서).

### 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은 정)